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66210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해움디자인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구의로 68, 3층(구의동)  
대표자 사내이사 김형철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환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소10635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 일명 'HU 또박또박' 서체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서체는 네이버 Software 자료실<sup>1)</sup>(software.naver.com, 이하 '네이버 자료실'이라 한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네이버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하였고, 유아용품 온라인 판매를 하는

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제작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문구를 이 사건 서체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경 이 운영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의 등의

1) 위 자료실 서비스는 2021. 8. 31. 종료되었다.

문구가 이 사건 서체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람은 피고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피고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홈페이지와 네이버 자료실에 이 사건 서체를 게시하면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하기 전 가정 등에서 비영리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하였다면 공지된 이 사건 서체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서체를 비영리적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사용허락계약'<sup>2)</sup>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서체를 영리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3,300,000원[= 기본 설치 라이선스(Basic Installation License) 금액 2,200,000원 + 2차적저작물 라이선스 금액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 요지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 소정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고, 저작물의 '이용'이란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구체적 지분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물의 '이용'에 포함 되지 않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방법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사용허락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는 저작물 '이용' 조건과 '사용' 조건이 모두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칭하는 계약을 '사용허락계약'이라고 통일하기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서체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서체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리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에는 과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서체의 사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체의 낱개 가격 상당액인 88,000원의 범위에서 피고가 단 12자의 글씨만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한정해야 한다.

## 나. 판단

### 1) 법리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

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 2) 피고의 사용허락계약 위반 여부

이 사건 서체가 네이버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는 네이버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료로는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저작자가 저작물인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하여 방법이나 조건을 정하는 사용허락계약은 저작자와 사용자가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들이 프로그램 패키지를 구입하여 개봉하는 때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나 다운로드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실행 과정의 일부로 약관에 대하여 버튼을 클릭하여 동의하는 방식(Click-Wrap License)으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다.

나)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서체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사용자들이 이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원고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현재는 "헤움디자인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폰트파일)의 경우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에 따라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 시 무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헤움디자인의 헤움서체 배포정책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과 나눔 정신의 실천입니다. 헤움폰트 배포정책과 달리 상업적 사용을 위한 복제 및 제3자에게 폰트파일 무단 배포, 게시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고, 원고는 다운로드할 사람이 위 내용에 관하여 '동의하기'를 체크해야만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동의하기'에 체크하고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원고와 다운로드한 사용자 사이에 그 서체 프로그램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된 이용 및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도 이전까지는 원고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페이지에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개인이 가정과 같은 비업무장소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내용이 있기는 하였지만 다운로드에 제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한 당시의 네이버 자료실의 다운로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네이버 자료실에서 '무료폰트' 항목을 선택하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서체들이 제시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서체를 클릭하면 별지 <그림 1>과 같이 화면 좌측에는 해당 서체의 디자인이 한글, 영어, 숫자 등으로 소개되고, 화면 우측에는 "무료다운로드"를 클릭할 수 있는 사각형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무료다운로드" 부분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서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서체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확인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 등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네이버 자료실에서 이 사건 서체를 다운받는 화면 하단에는 별지 <그림 2>와 같이 "무료사용 범위는 개인이면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안내문구를 인지한 상태에서 별지 <그림 1>의 "무료다운로드" 사각형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무료다운로드" 부분 바로 아래에는 "사용범위 프리 - 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개인',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무료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위 안내문구는 "무료다운로드" 사각형 부분과 상당히 떨어진 화면 하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안내문구가 사용허락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포섭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서체에 관하여 사용범위를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

양 상 익



판사

전보경

전 보 경



판사

김희수

김 희 수



열람용

별지

<그림 1> '헤움다꾸' 서체의 다운로드 화면



## <그림 2> 다운로드 화면 하단



한가지 유의할 점은 사용범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헤움다꾸폰트의 경우 국내 개인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폰트소개

다이어리 꾸미는 컨셉으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의 서체입니다.

---

### 사용범위

무로사용 범위는 개인이면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 정본입니다.

2022. 1. 17.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 박병요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보를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